

# 교원징계위원회규정

제정 2002. 3. 29

개정 2012. 3. 1

개정 2017. 6. 26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청강학원정관 제56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원의 징계를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원징계위원회(이하 “징계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조직 및 관할 등)** ①징계위원회는 5~9인(외부위원 1인을 포함)의 위원으로 조직한다.

②외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관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대학에서 법학,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3.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
4.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징계위원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교원(학교의 장은 제외한다)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, 그 위원은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교원 또는 학교법인(이하“법인”이라 한다)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위원장 선출 및 직무)**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징계의결의 기한)**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.

③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6조(징계의결 요구)** ①이사장은 교원 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

에 의한 교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,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다.

②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장에게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)** 이사장은 본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선)**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(별지 제3호 서식)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②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(별지 제6호 서식)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9조(제척사유)**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기피 등)** ①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본 규정 제9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징계의 종류)** ①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한다.

②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
③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
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
**제12조(경고 및 주의처분)** 총장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으로서 경고 및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이사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고처분은 2년이 경과한 날에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한다.

**제13조(징계의결)**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

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③이사장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

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,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14조(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)**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, 근무 성적, 공적, 개전의 정, 징계요구의 내용,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징계사유의 시효)**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
**제16조(징계위원회의 간사 등)** ①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.

**제17조(운영세칙)**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계류 또는 종결된 징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(3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(4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

<별지 제2호 서식>

청강법제 호

## 징계사유설명서

소 속		직 위	성 명
징 계 사 유			
<p>위 사실을 통보합니다.</p> <p>20 . . . . .</p> <p>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</p> <p>귀하</p>			





<별지 제5호 서식>

청강법제 호

### 교원징계처분결정서

소 속	직 위	성 명
주 문		
이 유	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	
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.		
년 월 일		
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<span style="float: right;">㉠</span>		
귀 하		
참고 :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 및 교원지위향 상을위한특 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.		



<별지 제6호 서식>

교원징계위원회제 호

### 관계인 출석요구서

인 적 사 항	소 속		직 위		성 명	
	주 소					
출 석 일 시						
출 석 장 소						
출 석 사 유						
사립학교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귀하의 의견을 듣고져 출석을 요구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청강학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㉠						
귀하						